

제 851 호  
1981. 8.1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
편집 : 문화공보관 김 진 호  
전화 : 72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: 72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	례		
제 1528 호 :	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개정조례	.....	3
◎ 규	칙		
제 1916 호 :	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	.....	5
◎ 고	시		
제 289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 변경허가	.....	8
제 290 호 :	신규급수공사정액제 실시 고시	.....	9
제 291 호 :	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변경지적승인 고시	.....	10
제 292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	.....	10
제 293 호 :	도시계획시설 변경 ( 폐지 )	.....	11
제 294 호 :	도시계획사업 ( 공용의청사 ) 시행허가	.....	11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◎ 공 고	
제 207 호 :	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취소 ..... 16
제 208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공람공고 ..... 16
제 421 호 ( 성동구 ) :	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..... 17
◎ 사 명	
◎ 출 식 통 지	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시장 박 영 수 圖  
1981년 8월 10일

○ 서울특별시조례 제 1528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 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내지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공사의시행) ①공사의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.

②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단종공사임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.

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업법을 준용한다.

제 8 조 (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귀속)

①계획급수지역내에서의 공사비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면적당 일

정한 금액 (이하 "정액공사비"라 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공사의 거리 및 난이도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의 150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액공사비외에 150 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특정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요가의 부담으로 당해지역내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급수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 정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및 시설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.

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급수장치는 양수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시소유로 한다.

⑤시장은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감면대상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월이 내외 기간을 정하여 공사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공사비의 산출방법) ①정액공사비는 재료비, 노무비, 도로복구비

양수기대금, 일반행정판디비 및 수수료 ( 자체검사, 준공검사, 실제수수료 포함)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,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,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.

③ 제 8 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공사비는 실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.

제 10 조 ( 정액제 공사비 및 실시지역의 고시 )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공사비와 정액제 급수공사를 실시하는 지역 및 특정지역은 매년초에 시장이 고시한다. 다만, 공공요금 및 물가 노임등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고시할 수 있다.

제 11 조 제 1 항중 " 제 10 조 " 를 " 제 8 조 " 로 한다.

제 12 조 제 3 항중 " 제 8 조 " 를 " 제 7 조 " 로 하고 " 제 9 조 " 내지 " 제 10 조 " 를 " 제 8 조 " 내지 " 제 9 조 " 로 한다.

제 2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9 조 ( 공사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)

① 시장은 무허가건물 양성과 지역내의 기존 연건평 10 평미만의 주택으로서 20 세대이상 집단 급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의 30 퍼

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 32 조 제 1 항중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다.

제 32 조 제 1 항중 제 1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징수처분의 요구가있을때

제 34 조 제 2 항중 " 50,000 원 " 을 " 500,000 원 " 으로 한다.

제 4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1 조 ( 권한위임 )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 6 조 규정 " 의한 공사의 승인 및 이에 관한 처분과 공공급수전의 설치허가
2. 제 12 조의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
3. 제 17 조의 양수기의 시험
4. 제 18 조 제 2 항의 공용급수전의 관리인 지정
5. 제 21 조의 급수중지 및 배전
6. 제 22 조 내지 제 25 조의 급수 사용료 급수관손료, 가압료의 징수

및 급수사용량의 제량조정

7. 제 27조 및 제 28 조의 임시급수사용료 징수 및 가산금 징수

8. 제 30조 제 3항의 신고 및 급수중단 처분

9. 제 32조의 정수처분

10. 제 34조의 과태료처분

11. 제 36조의 이의신청 결정

제 22조중 별표제 2 나. 급수종별 구분표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 2종: 다른 급수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(다만, 연탄소매업소, 연초소매소, 전공면적이 3평미만이 양곡소매소, 전용면적이 2평미만이 구경가게는 제 3종 요율 적용)에 대한 급수.

부 칙

(3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승인 신청을 한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
1981년 8월 10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916 호

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의 2제 1항중 "시장"을 "구청장"으로 하고, 제 2항내지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 2조의 2 (급수신청) ②조례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급수공사의 시기를 결정하여 정액세공사비 (부가소요공사의가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) 및 시설분담금을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조례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지역내 시정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제 2항및제 3항의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조의 3을 다음과 같이한다.

제 2조의 3 (공사의시행) ①구청장은 제 2조의 2의 급수공사비가 납부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공사기간은 가정 급수공사 1전당 4 일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경 50%또는 연간 30m이상 공사 및 대규모 다량급수처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도급자는 공사완료후 1일 이내에 급수공사 준공제를 제출하여야하며, 공사준공후 즉시 통수한다.

제 6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제 6 조 (공사의 하자책임) ①조례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자는 공사의 준공점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.

제 21 조 제 2항중 "15일 이내에"를 "30일 이내에"로 한다.

제 34조를 삭제한다.

제 2 조의 2 제 1항중 별자제 1-2호 서식과 제 29 조 제 1항중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  
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 과 배 료 처 분 기 준 표

처 분 종 류	해당조문	과 배 료		
		조례제 34 조 제 1항	조례제 34 조 제 2항	조례제 34 조 제 3항
급수물 도용한자	32-1-2	징수물 면한	1. 제 3 종 (시민주거용) 250,000원 2. 기타업종 500,000원	조례별표 제 1호에 의한 준담금을 다음 비율로 산정
부정급수공사	32-1-3	기간에 걸친 추정사용량에 대한 요금을		
방수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	32-1-4	다듬의 비율로 산정		
무허가 복수가압시설 설치운영	32-1-5	1. 제 3 종 (시민주거용급수) : 3 배		1. 제 3 종 (시민주거용급수) : 3 배
사설소화전 무단사용	32-1-6	2. 기타업종 : 5 배		2. 기타업종 : 5 배
정수처분 수전무단 개질사용	32-1-7			
업종이 다른 수전상호 간 급수혼용	32-1-8			
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자	34-?			

\*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은 병과할 수 있다.

급수공사신청서	
설치장소	구 동 번지 호 ( 동 반 )
수요가성명	주민등록번호
용도및구경	
특기사항	
<p>1.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. 급수공사 준공과동시 급수조례 제 13 조에 의거 양수기 및 옥외 시설일체를 이의없이 귀부에 기부 채납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>현주소:      구      동      번지      호      동      반</p> <p>수요가성명:      ①      *</p> <p>전      화:      *</p> <p>첨   무   서   류: 1. 건축허가증 사본 1 봉 (건축중인 건물에 한함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2. 지적도 1 매</p> <p>* • 포장도로를 굴착하여야할 경우에는 지적도 3매를 첨부 하십시오.</p> <p>*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지 사용 승낙서 1매를 첨부 하십시오</p>	
설치장소약도	

고 시

○서울특별시고시 제 289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 (78.3.23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되고, 동고시 제 111 호 (79.3.9), 제 85호 (80.3.4), 제 65 호 (81.3.10)로 변경 시행허가된 강남구 대치동 산 54번지와 3필지 단국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 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1. 8. 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대치동 산 54번지와 3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단국중고등학교 설치

다. 사업의 규모

당초 대지면적 (11,630 평)  
 건축면적 (4,169.6 평)  
 변경 대지면적 (11,630 평)  
 건축면적 (4,544.72 평)

라. 사업의착수 및 준공 예정일

당초 착수에정일 : 78.5.  
 준공예정일 : 82.5.30  
 변경 착수 일 : 81.6.26  
 준공예정일 : 82.5.30

마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 - 3

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박정숙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사.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

토 지 세 목 조 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이해관계인	
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토지구획정리사업 2 지구	1104-1	채비지	548.8평	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	박정숙		
" "	1104-2	"	731.2평	"	"		
강남구 대치동	산 54	임	3,720평	"	"		
" "	산 55	"	6,630평	"	"		


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0 호</p> <p>신규급수공사정액제실시고시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 8 조 내지 제 10 조에 의한 신규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 지역 및 정액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1981. 8. 10 서울특별시 장</p> <p>1. 실시일 : 1981년 8월 10일 접수분부터 시행</p> <p>2. 실시지역 : 서울시 급수가능 지역 전역 (특정지역 제외) 다만, 미급수 지역 및 급수 제한 지역은 급수자능시 실시 미급수지역과 급수</p> <p>5. 정액제 공사비 적용방법</p>	<p>제한지역 상세지번 및 도면은 해당 구청수도 2과에 비치</p> <p>3. 대상 :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건축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용 (단독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) 단, 연건축 면적 165㎡ 이상은 일반건축물 적용</li> <li>○ 일반건축물</li> </ul> <p>4. 정액제 공사비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용 건축물 세대당 : 290,000 원</li> <li>일반건축물 연건축면적 165㎡ 미만 : 290,000 원</li> <li>○ 연건축면적 165㎡ 이상 : ㎡당 1,800 원</li> </ul> <p>다만, 경과금은 별도 납부하여야 함.</p>	
<p>실 공사비 소요액</p>		
<p>정액제공사비외 150%미만</p> <p>290,000 원</p> <p>165㎡이상 당 1,800 원</p>	<p>정액제공사비의 150%이상</p> <p>정액제공사비의 150%이상 추가분을 가산하여 징수</p>	<p>비 고</p>
<p>6. 특정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수 공사를 위하여 특별한 시설을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지역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창단지및주변 125㎡이상</li> <li>· 대교단지및주변 110㎡이상</li> <li>· 도면은 수도권 급수과에 비치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그 비용부담 방법등에</li> </ul>	<p>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과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.</p> <p>7. 정액제 공사비 납부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비는 신청후 납입고지서에 의거 공산전에 납부 하여야 함.</li> </ul> <p>8. 경과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시일 이전 접수분과 이미 승인된 신규 급수공사는 종전 실비정산제에 의한다.</li> </ul>	

◎ 1981. 8. 5 발령호수 : 281

감 사 담 당 관 박 심 재  
지 방 행 정 주 사

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.

서 울 특 별 시 장

출 석 통 지

인 사 항	성 명	이 영 화 ( 李 永 和 )	소 속	중 구 민 발 위 과
	본 직	경 남 하 문 군 적 란 면 고 절 리 411	직 명	지 방 행 정 주 사
	주 소	서 울 서 대 문 구 창 천 문 134		
출 석 이 유	인 사 위 원 회 출 석 진 술			
출 석 일 시	1981 년 8 월 21 일 16 시 00 분			
출 석 장 소	시 청 소 회 의 실 ( 15:40 까지 출 무 )			
유 의 사 랑	1. 진 술 은 위 한 출 석 을 원 하 지 아 니 할 때 에 는 하 기 진 술 권 포 기 서 를 즉 시 제 출 할 것. 2. 사 정 에 의 하 여 서 면 진 술 은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인 사 위 원 회 개 리 일 전 일 까 지 도 착 하 도 록 진 술 서 를 제 출 할 것. 3. 정 당 한 사 유 서 를 제 출 하 지 아 니 하 고 지 정 된 일 시 에 출 석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서 면 진 술 서 또는 진 술 권 포 기 서 등 도 제 출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진 술 할 의 사 가 없 는 것 으 로 인 정 처 리 한 다.			

지 방 공 부 원 정 제 및 소 청 규 정 제 4 초 의 규 정 에 의 거 위 와 같 이 귀 하 의 출 석 을 통 지 합 니 다.

1981 년 8 월 10 일

서 울 특 별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

㉑

귀 하

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 81.8.10-81.12.10.                  바. 토지조서 : 별첨 (정신학원 소유토지이므로 생략)                  아. 공사설계도면 : 별첨</p> 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93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변경 (폐지)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(76.8.21)</p> <p>○ 도시계획 시설 변경조서</p>	<p>및 서울시 고시 제 256 호 (76.10.2) 의 관련임.</p> <p>2. 영동아파트지구 (1-1 지구) 내강남구 반포동 14 부락 내의 도시계획시설 (아동공원) 은 다음과 같이 이를 폐지 한다.</p> <p>1981. 8. 5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시설명</th> <th>위치</th> <th>면적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정</td> <td>아동공원</td> <td>영동1-1 지구</td> <td>1,300 ㎡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변경</td> <td>"</td> <td>"</td> <td>0</td> <td>폐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	기정	아동공원	영동1-1 지구	1,300 ㎡		변경	"	"	0	폐지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												
기정	아동공원	영동1-1 지구	1,300 ㎡													
변경	"	"	0	폐지								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294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79 호 (80.5.28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종로경찰서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>1981. 8. 8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1. 사업시행지 : 종로구 경운동 90-18 부근</p> <p>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공용의청사)</p> <p>3. 사업시행 규모 : 4,735 ㎡</p> <p>4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: 종로구 경운동 90-18 종로경찰서장</p> <p>5. 사업시행 기간 : 81.7-83.7.31</p> <p>6.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: 별첨 (별첨생략)</p> <p>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,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</p> <p>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</p>															

○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
 • 토지조서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(㎡)	전 입 면 적(㎡)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
					주 소	성 명	
종로구경운동	90-18	내	3,593.7	3,593.7	종로구명륜동1가5-22 관훈동90 청운동52-19 관훈동84 관훈동85-6 관훈동85-10 서대문구연희동287-3	국유지	종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
"	101-6	대	343.5	127.9		홍석우	
종로구관훈동	90	대	56.1	19.6		이천석	
"	84-15	대	90.9	90.9		국유지	
"	84-25	도	15.9	15.9		이석구	
"	95-1	도	49.6	49.6		시유지	
"	85-3	도	99.5	99.5		조남섭	
"	85-4	대	123	123		국유지	
"	85-5	대	73.1	73.1		"	
"	85-6	대	126.3	126.3		배병찬	
"	85-7	대	66.4	66.4		국유지	
"	85-8	대	52.9	52.9	"		
"	85-9	대	64.8	64.8	"		
"	85-10	대	115	115	백준기	종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	
"	85-11	대	116.4	116.4	이상원	종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	
계			4982.1	4735			

25-12 제 851 호 시 관 1981.8.10

1725

· 건물조사						
소재지	지번	구조	총건평	소유자		이해관계인
				주소	성명	
종로구경운동	90-18	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	801.07		국유	
· 관훈동	90	목조와증명가진	17	종로구관훈동90	이천석	
· 경운동	101-6	벽돌조스레트	33	종로구명륜동1가5-22	홍석우	
· 관훈동	84-15	목조와 증평 가진	14		국유	
"	85-4	목조와 증평 가진	16.12		국유	
"	85-5	세면부덕조와 증평가진	19.27		국유	
"	85-6	목조와 증평 가진	17.15	종로구관훈동85-6	배병찬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"	85-7	"	12.0		국유	
"	86-8	"	8.3		국유	
"	85-9	목조와증, 세 멘 벽돌조	14.72		국유	
"	85-10	목조와증, 성 가진	11.0	· 관훈동85-10	백순기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"	85-11	"	15.84	서대문구연희동287-3	이상원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
제 851 호 시 보 1981.8.10 25-13

○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• 토지조서							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면 적 (㎡)	소 유 자		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
					주 소	성 명	
종로구경운동	90-18	대	3593.7	3593.7	종로구명륜동1가5-22	국유지	
"	101-6	대	343.5	127.9		홍석우	
종로구관훈동	90	대	56.1	19.6	" 관훈동90	이천석	
"	84-15	대	90.9	20.9		국유지	
"	84-25	도	15.9	15.9	" 청운동52-19	이석구	
"	85-1	도	49.6	49.6		시유지	
"	85-3	도	99.5	99.5	" 관훈동84	조남섭	
"	85-4	대	123	123		국유지	
"	85-5	대	73.1	73.1		"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
"	85-6	대	126.3	126.3	" 관훈동85-6	배병찬	
"	85-7	대	66.4	66.4		국유지	
"	85-8	대	52.9	52.9		"	
"	85-9	대	64.8	64.8		"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
"	85-10	대	115	115	" 관훈동85-10	백준기	
"	85-11	대	116.4	116.4	서대문구연희동287-3	이상원	중구남대문로1가14 조흥은행(근저당권)
계			4987.1	4735			

25-14 제 851 호 시 보 1981.8.10

1726

○ 건물조사				소 유 자		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· 성명
소재지	지번	구조	층건평	주소	성명	
종로구경운동	90-18	철근콘크리트 스라보조	808.07		국 유	
• 관훈동	90	목조와습평가건	17	종로구관훈동 90	이천석	
• 경운동	101-6	벽돌조 스테트	33	• 명동문1가 5-22	홍석우	
• 관훈동	64-15	목조와습평가건	14		국 유	
•	85-4	목조와습평가건	16.12		•	
•	85-5	세면부벽조 사중 평가건	19.27		•	
•	85-6	목조와습평가건	17.15	• 관훈동 85-6	비병찬	중구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•	85-7	•	12.0		국 유	
•	85-8	•	8.3		•	
•	85-9	목조와습, 세면 벽돌조	14.22		•	
•	85-10	목조와습, 평가건	11.0	• 관훈동 85-10	백준기	중구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•	85-11	•	15.04	서대문구연희동 287-3	이상원	중구남대문로 1가 14 조흥은행 (근저당권)

제 851 호

시

보

1981. 8. 10

25-15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7 호

열사용기자재형식승인취소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6 조제 2, 3

호 규정에 의거 열사용기자재 형식 승인율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1. 8. 3.

서울특별시장

다

을

업체명, 대표, 소재지	기자재명	형식승인번호	취소내용	취소사유
삼 일 사 김 지 수 설문구성수 1 가 8 의 44	구멍탄용 연소기	제 9-1002 ~ 1 호	고정식 2 호탄용 ( 화덕용 )	1. 형식승인기 준미달 2. 표시미비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8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공람공고

1. 건설부공고 제 6 호 (78.1.18) 및 건설부공고 제 14 호 (79.2.8) 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된 강남구영동 1-3 주구 학교시행사업 구간내 저속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학교)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제 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
게 보인다.

1981. 8. 5

서울특별시장

공 략 개 요

- 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영동 1-3 주구
- 나. 사업의종류별 민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
- 다. 사업외규모(면적) : 14,998.4
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- 마. 사업예정기간 : 1981.7-1981.10
- 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

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부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

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(별첨)

자. 기타사항: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

사 령

◎ 1981.8.1 발행번호: 276호

서울특별시세무국장 이 상 용  
부 이 사 관

산림청 기획관리관계 보람,

부산직할시재무국장 김 완 중  
부 이 사 관

서울특별시 세무국장 에 보람.

◎ 성 동 구 공 고 체 421 호

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

서울특별시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용 개각 사용하였기 동조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1. 8. 1

성 동 구 청 장

대 통 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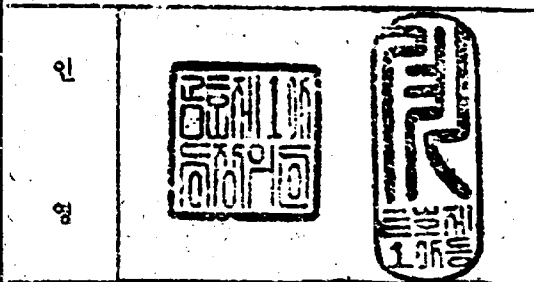
◎ 1981.8.3. 발행호수: 274

구 회 경 리 과 최 상 식  
지 방 토 목 기 과

성 동 구

서 울 특 별 시 장

- 1. 공인결정: 아래
- 2. 사용기각일시: 81.8.1 09:00
- 3. 사용기각공인인명: 아래



◎ 1981.8.4 발행호수: 279

청 소 과 윤 관 호  
지 방 토 목 기 사 보

인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.

서 울 특 별 시 장

공인명	금호1가등장 각인및제인
-----	--------------

◎ 1981. 8. 5 발령호수 : 281

감 사 담 당 관 박 심 재  
지 방 행 정 주 사

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.

서 울 특 별 시 장

출 석 통 지

인 사 항	성 명	이 영 화 ( 李 永 和 )	소 속 직 명	중 구 민 발 위 과 지 방 행 정 주 사
	본 직	경 남 하 문 군 적 량 면 고 절 리 411		
	주 소	서 울 서 대 문 구 창 천 문 134		
출 석 이 유	인 사 위 원 회 출 석 진 술			
출 석 일 시	1981 년 8 월 21 일 16 시 00 분			
출 석 장 소	시 청 소 회 의 실 ( 15:40 까지 출 무 )			
유 의 사 랑	1. 진 술 은 위 한 출 석 을 원 하 지 아 니 할 때 에 는 하 기 진 술 권 포 기 서 를 즉 시 제 출 할 것. 2. 사 정 에 의 하 여 서 면 진 술 은 하 고 자 할 때 에 는 인 사 위 원 회 개 리 일 전 일 까 지 도 착 하 도 록 진 술 서 를 제 출 할 것. 3. 정 당 한 사 유 서 를 제 출 하 지 아 니 하 고 지 정 된 일 시 에 출 석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서 면 진 술 서 또는 진 술 권 포 기 서 등 도 제 출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진 술 할 의 사 가 없 는 것 으 로 인 정 처 리 한 다.			

지 방 공 부 원 정 제 및 소 청 규 정 제 4 초 의 규 정 에 의 거 위 와 같 이 귀 하 의 출 석 을 통 지 합 니 다.

1981 년 8 월 10 일

서 울 특 별 시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

㉑

귀 하

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배 석 현 ( 裴 錫 顯 )	소 속	중 구 황 학 동
			직 명	지 방 행 정 주 사 보
사 본	본 적	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427		
합 주	주 소	서울 종로구 창신동 산 6 번지		
출 석	이 유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 석	일 시	1981 년 8 월 21 일 10 시 00 분		
출 소	장 소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출두 )		
유 의	사 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려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것.</li> <li>3. 전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<p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 년 8 월 10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 하</p>				

## 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조세형 ( 趙世衡 )	소 속	등주위생과
			직 명	지방행정서기
사 함	본 적	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학리 225		
	주 소	서울 성동구 증곡동 74-12		
출석이유	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석일시		1981년 8월 21일 16시 00분		
출석장소	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출두 )		
유의사항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				
1981년 8월 10일				
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				
귀 하				

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유시영 ( 柳時榮 )	소 속	중구시민봉사실
			직 명	지방행정주사
사 본	본 적	서울 중구 신당동 309-4		
항 주	주 소	서울 강남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215동 204호		
출석 이유	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석 일시		1981년 8월 21일 16시 00분		
출석 장소	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출두 )		
유의 사항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서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서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<p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외 같이 귀하가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년 8월 1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 하</p>				

## 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이 동 우 ( 李 東 雨 )	소 속	중구총무과
			직 명	지방행정서기
사 항	본 적	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리 460		
	주 소	서울 중구 신당동 304		
출 석 이 유	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 석 일 시		1981 년 8 월 21 일 16 시 00 분		
출 석 장 소		시청 소회의실 ( 15.40 까지 출두 )		
유 의 사 항		<p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p> <p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p> <p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p>		
<p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 년 8 월 10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 하</p>				

## 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오 원 근 ( 吳 元 根 )	소 속	중구신당1동
			직 명	지방행정주사보
사 합	본 제	서울 성동구 사근동 224 번지		
	주 소	서울 강서구 신월동 215 번지		
출 석 이 유	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 석 일 시		1981년 8월 21일 10 시 00 분		
출 석 장 소	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양두 )		
유 의 사 항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적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<p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>1981년 8월 13일</p> <p>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(인)</p> <p>귀 하</p>				

25-24

제 851 호 시

보 1981.8.10

## 출 석 통 지

인 적	성 명	박 근 욱 ( 朴 根 沃 )	소 속	비상계획보좌관실
			직 명	별정직 6급
사 본	적	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		
항 주	소	서울 강동구 잠실 3동 323-105		
출 석	이 유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 석	일 시	1981년 8월 21일 16시 00분		
출 석	장 소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출두 )		
유 의	사 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봉지합니다.				
1981년 8월 10일				
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				
⑩				
귀 하				



출 석 통 지

인 적	성명	이 율 옥 ( 李 允 玉 )	소속	간서구보건소
			직명	지방행정서기
사 함	본적	전북 남원군 아영면 구상리 352		
	주소	서울 동작구 상도4동 207-21		
출석이유		인사위원회 출석진술		
출석일시		1981년 8월 21일 16시 00분		
출석장소		시청 소회의실 ( 15:40 까지 출두 )		
유의사항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
<p>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년 8월 10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 하</p>				